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본청 "940"을 "941"로, 제3호 직속기관 "982"를 "981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.